

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(이승미 의원 발의)

제 안 설 명



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이승미
(더불어민주당, 교육위원회)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의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
서대문 제3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의원입니다.
지금부터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
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- 동 조례안은 「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」 및
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
시행으로 대안교육기관의 등록과 지원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가
커짐에 따라 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
센터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.

- 더불어 대안교육지원센터가 이미 「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
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」에 따라 운영되고 있었으나 관련 법제
정비 과정에서 해당 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새롭게 설립 근거를
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.

- 해당 조례 개정을 통해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관리
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고, 기운영 중인 센터의 안정적인
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-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인쇄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,
본 조례안의 취지를 이해하시어
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